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

장 호 순
대전중재위원・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대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3월 4일 대전에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장호순 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상곤 위원(중재부장, 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1. 언론중재법의 제정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보다 빈번해 지는 분쟁 중의 하나가 언론자유와 인격권간의 충돌이다. 언론자유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신속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개인에게 입힐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을 요구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언론의 민주적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개인의 인격권도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민주주의 사회로서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일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5개의 법안이 절충되어 통과된 법이다.[1] 열린우리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노동

당의 “언론피해구제법안,” 한나라당의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안,” 언론개혁연대등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언론피해구제법안,” 그리고 민변과 언론인권센터가 청원한 “언론피해구제법안” 등이다. 5개 법안 중 한나라당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언론보도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언론중재제도 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입법의 주된 목적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법안은 현행 언론중재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었다.

기존의 언론중재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한나라당 제출 법안 역시 여당안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언론중재위원의 숫자, 중재위원장의 상임여부, 중재위원의 구성 및 자격,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의 전치절차에 있어서만 다른 4개안과 약간 이견을 보였다. 반면 정간법과 방송법에 구분되어 있던 언론중재 규정을 단일법안으로 만들고, 인터넷언론도 중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중재와 조정을 구분하고, 중재위에 증거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중재결정이의신청을 소송제기로 간주하고, 시정권고제도를 강화하고, 언론사 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안, 그리고 시민단체의 입법청원 법안에는 한나라당안과 달리, 언론피해상담소 설치, 언론사 정보공개, 허위과장광고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규제하려는 강력한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야간의 절충을 거쳐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7월 28일부터 발효된다. 언론중재법으로 달라진 중재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간법, 방송법 등으로 분산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화함.

▶인터넷언론도 피해구제 대상으로 포함.

▶중재와 조정을 구별하여, 중재위의 조정 기능을 명시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위에 조정 및 중재신청이 가능해짐.

---

1) 열린우리당 김재홍의원외 16인은 2004년 10월 4일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수용해, 언론중재법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0월 20일 문병호 의원 등 150인의 발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10월 21일 천영세 의원등 10인의 발의로 “언론중재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2004년 11월 24일 정병국 의원외 120인의 발의로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조정·중재절차를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닌 임의적 절차로 규정.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소제기로 간주함.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행위 없이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함.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신청이 가능해짐.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최대 중재위원 정원을 80인에서 90인으로 증원함.

▶중재위원회 운영재원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언론중재법의 제정 배경

지난해 여당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자, 한 법조인은 여당이 “한 정파와 일군의 시민세력의 의견만을 집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당의 입법안을 제안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를 통과시켜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상, 2004)

이러한 진단은 소위 “신문법”에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언론중재법에도 적용하긴 무리가 따른다. 언론중재법은 그 출발점이 신문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시도는 시민운동이나 정파와는 무관하게, 법조계 출신의 언론중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던 언론중재법의 입법이 가능해진 것은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17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소위 진보진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언론개혁입법”의 현실화가 가능해지면서부터였다.

1998년부터 언론중재법 제정을 주장한 법조계 인사는 지난해 말 다음과 같이 법안의 목적을 재차 설명했다.

> 현재 논의하고 있는 통합법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피해구제방법과 절차를 하나의 법령에 아

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는 권익구제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양경승, 2004)

그러나 이러한 입장, 즉 언론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도는 언론중재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단체나 여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청원한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훨씬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어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는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그 제한이 더욱 엄격함을 요하는 반면, 언론기관의 면책사유는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여 허위보도라고 하더라도 특히 공인의 경우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또한 언론사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언론사의 배상금액이 평균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소가가 2천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음)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으며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도 인정되지 않고 있음. (언론개혁국민행동, 2004)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언론중재위 측의 요구와, 언론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화하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결국 언론중재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1) 언론중재위측의 법안

언론중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언론을 적극 통제한 소위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진정 언론자유와 언론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다. 당시 언론중재제도는 입법자들이 용어의 의미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채택되었으며, 사실상 조정에 불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라고 착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제도는 제6공화국에서도 정간법과 방송법 조항을 통해 존속되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정을 받으면서 존재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법제에 독특한 제도로서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에 직업 법관 이외에 언론계의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언론과 피해자 쌍방을 이해시키는 데 유리하고,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 이전 단계에서 절충할 기회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상의 비용과 번잡함을 피하여 피해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9.7.22. 결정 96헌바19)

특히 1990년대 들어 언론에 대한 불만이 점증되기 시작했고, 그를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로 언론중재제도가 나름대로 효율성을 보이는 듯 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중재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나 세밀한 검토 없이 도입된 언론중재제도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6년 법개정을 통해 정정보도의 용어를 반론보도로 수정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중재” 기능을 부여했다. 그렇지만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지는 못했다. 언론 상대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 사례는 1990년대 중반이후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제도가 언론피해구제에 실효를 거두려면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표. 1995년 이후 중재신청건수

연도	신청건수
1995년	528
1996년	556
1997년	490
1998년	602
1999년	641
2000년	607
2001년	659
2002년	511
2003년	724
2004년	759

근거법률이 정간법이나 방송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법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언론관련 분쟁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이며 효율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중재위원회에 “중재”기능이 없다는 문제였다. 언론중재위는 알선-권고 기능인 조정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원래 조정이란 제3자가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적절한 절충안을 제시하여 양자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제도이다. 그러나 조정은 민사조정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 등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정의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설사 조정이 쌍방간에 수용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사인간의 약속에 불과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중재의 경우는 쌍방간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중재는 조정에 비해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 중재는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대신 중재인이라는 제3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중재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제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의 절차와 내용 등을 법률로써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은 이러한 중재 기능이 아니라 조정기능이었다. (유지태, 2004; 조수정, 2004).

199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언론중재법안이 구체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2000년 11월에 개최된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양삼승 변호사가 "'언론중재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2000년, 양삼승).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중재법이라는 단일법을 만들고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전금지 등 제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흡수통합

▶언론사내 옴부즈맨 설치

▶판례로만 존재하던 위법성 조각사유를 법조문에 명시

▶손해배상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축

▶조정과 중재를 명확히 법적으로 구분하고,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뿐만아니라 손해배상도 포함시키고

▶정정보도도 반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음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도 조정대상과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을 정하고 "언론보도의 목적과 경위, 주의 정도, 피해자신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여부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상당한 범위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쌍방이 미리 중재결정을 받기로 합의하거나 중재절차 진행 중에 동의하여 종국적 분쟁합의제도로서 중재가 가능케 함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소송제기로 간주하고 제2심인 고등법원에서 관할케 함

▶언론보도로 인하여 현저히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표현물의 제작 판매 방송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중재위원장의 상임화, 중재위원의 대통령 임명

▶선거시기의 반론보도 청구절차 통일

그러나 언론중재위 측에서 제안한 언론중재법안은 언론이나 국회로부

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02년 민주당이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에 일부 반영되긴 했으나 민주당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양삼승, 2003)

2) 시민단체의 언론개혁 법안

언론중재위 측에서 제시한 후 4년 넘게 구체적인 법제화 기미를 보이지 않던 언론중재법안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선 것은 2004년 후반부터였다. 소위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2004년 9월 언론중재법 제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언론개혁입법의 일부로 언론피해구제법이 국회의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안을 토대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안이 만들어져 발의되었고, 한나라당도 독자적인 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의 입법청원 취지의 핵심은 여론을 독점하고 허위보도를 일삼은 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견제였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동시에 언론사의 자율적인 허위보도 예방 및 사후 시정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언론피해구제법을 청원했다. (인용)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자유는 신장됨에 비해 언론은 그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국민들은 '무책임한 보도태도,' '권력과 유착된 보도태도,' '언론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 '특정 기업·광고주를 위한 편파보도,' '특정 소수 언론매체에 의한 여론 독점' 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국민연대, 2004)

시민단체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그 배상을 받거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데, 그 이유는 법원이 지나치게 언론의 편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2]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대단히 위축되고 있고 반면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훨씬 강조하고 있고,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수가 소액이라 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 각종 새로운 언론피해구제 장치의 법제화를 요

2) 2002년 이후 일련의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2002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손해배상사건 26건 중 언론사 승소율은 73%인 반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언론사 승소율은 27.6%에 불과했다. (문재완, 2004)

구했다. 시민단체가 청원한 언론피해구제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대원칙을 천명

▶사자(死者)에 대한 인격권 보호조항을 도입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함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함

▶방송사, 일반일간신문사, 통신사에 한해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함

▶주요 언론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설치

▶언론사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도입

▶언론의 부당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국가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언론피해구조기금을 설치

▶배임수증 등 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한 언론계 취업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한편 시민단체의 법안은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

▶구술신청 허용 등 중재신청 절차 보완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중재절차 규정 도입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언론중재위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법안을 토대로 독자적인 입법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안과 절충을 거쳐 2005년 1월

1일 언론중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중재위나 시민단체의 법안 내용 중 일부는 국회에서 수용되지 못했는데, 언론중재위측 법안내용 중에는 조정전치주의, 중재위원장의 상임화, 중재위원의 대통령 임명, 선거시기의 반론보도 청구절차 통일 등이 수용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법안내용 중에는 언론사 정보공개, 선거보도관련 특칙, 언론광고 규제, 언론피해상담소 및 언론피해구제기금 설치, 언론사내 심의기구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3.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1)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제3조),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한편 언론의 공적 책임을 명문화하여 (제4조) 공정성, 객관성,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신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타인의 명예보호,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을 명시했다.

2) 신설 구제 제도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침해할 수 없는 인권격을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로 나열하고 있다. (제5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명문화했는데,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로 규정했다.[3)]

---

3)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0조는 “제302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제

사망한 자의 인격권에 대해서도 구제절차를 규정해 사망한 후 30년 이전까지는 유족이 그 구제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법은 소위 옴부즈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신설했다. (제6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을 하며,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언론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취업금지 조항(제33조)도 신설되었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형집행 종료후 5년, 집행유예 종료후 2년 이전에는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상의 강제규정 (고충처리인 임명, 정정보도문 게재, 형법 357조 위반자 취업금지)등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제34조)

3) 중재위원회의 구성 변화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의 최대인원을 종전의 80인에서 90인으로 늘렸고, 위원의 추천자격도 약간 변경하여 대한변협이 5분의 1 (정간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5분의2)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언론인 출신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요건으로 두었다. 법관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중재부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중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재사건에 중재위원이 관련되는 경우 제척사례를 명시하고, 중재위원 기피신청제도를 만들었다. (제10조)

751조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만, 그러한 보도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을 조각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해 주었다.

중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사건 당사자가 중재위원의 배우자나 과거 배우자인 경우, 혹은 중재위원의 친족인 경우와 중재위원이 해당 사건의 대리인이거나, 해당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등이다.

위원회 조직도 법적 근거규정을 갖게 되어, 사무처 설치가 명문화되었고, 위원회 활동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회 운영재원도 국고 보조외에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 중재 대상의 변화

언론중재법은 중재와 조정을 명확히 구분해서, 언론중재위의 기능이 조정 위주임을 인정하고, 조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재의 경우는 언론중재법상의 조정절차와 민사소송법상의 조정에 관한 기준(제34조, 35조, 39조, 41-45조)을 준용하도록 했다. 조정에 의한 합의는 재판상의 화해로 인정해 중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한편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할 경우 인정이 되고, 이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제24조)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 결정도 내릴 수 있게 했다. (제30조) 손해배상은 정정보도 등과는 달리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 기능이 종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 우선 정간물에 국한되었던 시정권고 기능이 모든 언론매체로 확대되었다.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정의를 분명하게 제시해 혼동을 줄이려 시도했다. (제2조)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정의했고,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

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제14조)

정간법에서는 산재했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권의 실익무효 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할 때, 혹은 국가기관의 공공회의나 법원의 재판절차에 근거한 사실보도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제15조)

정정보도의 형식도 명문화 하여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사실 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TV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도록 했다. (제15조)

5) 중재절차상의 변화

언론중재법은 신청인이 중재부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조정신청은 언론보도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종전은 1월), 언론보도 후 6월 이내에 해야 하고, 서면 외에도 구술이나 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언론사에 먼저 구제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18조) 추후보도 청구권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로 지정해 역시 종전보다 2월 연장했다.

중재부의 조정절차는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종전에는 1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정간법상의 직권중재와 유사하게 중재부는 직권조정결정을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22조)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그리고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제23조)

그러나 직권중재와 마찬가지로 직권조정에 대해 양방은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직권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때 피해자가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가 피고가 된다.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제20조)

조정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단 종전에는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중재위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여, 반론보도 청구도 정정보도와 마찬가지로 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6) 피해구제 소송절차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절차 뿐만 아니라 정간법에는 없던 피해구제 소송절차를 새로이 규정했다. 조정신청과 마찬가지로 언론피해구제 소송에서 원고는 법원에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중에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법원은 정정보도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제27조) 기타 언론피해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한편 언론사가 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이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했으나, 향후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를 배상해야 한다. (제28조)

4.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2005)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정간물법·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을 통합해 피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행의 중재절차를 조정절차로 하고, 중재절차를 새로이 규정

현행 중재절차가 그 실제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에 가까워 법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조정과 중재로 그 절차를 이분화 함으로써 혼란의 여지를 없앴으며 청구인들이 절차에 대한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중재대상화를 통한 중재위를 통한 일회적 피해구제 가능

현행은 중재위가 반론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중재를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재위가 언론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당사자간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완충장치를 위원회에 둠으로써 언론사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절차를 피하고 비용없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인터넷 매체의 신속성, 무제한적 배포성으로 인해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가 매우 쉽게 그리고 빨리 이루어짐에도 여태껏 인터넷 매체에 대한 법적 장치 미비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피해자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언론의 보도도 지나친 신속성보다는 보도의 신중함에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소제기로 간주

현행 법률은 중재결정에 대해 언론사가 이의신청할 경우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신청인은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언론사의 이의신청 남발을 억제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6) 정정보도청구요건의 완화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청구인들의 제도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신청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본질상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정보도청구를 구태여 불법행위로 인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입증요건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절차를 따르도록 해 민법 제764조가 인정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예외적 원상회복조치와도 다른 새로운 권리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청구방법을 다양하고 쉽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향후 접수절차의 편리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법적 하자있는 청구남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시정권고는 자체심의를 통해 실정법상 문제가 되는 보도에 한해 이뤄졌으나, 향후 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특정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이들이 시정요구해 올 경우 심의기준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준위반여부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언론피해 구제나 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주장은 언론자유 일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문재완, 2004; 박용상, 2004; 이신, 2004)

▶언론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고, 판례로 형성된 언론의 면책범위를 일률적으로 축소하고, 언론피해의 구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윤리적 판단사항들이 법으로 강요되고 있다.

▶공적 책임의 정도가 다른 매체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규제를 받게 된다.

▶언론중재법으로 언론피해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단일화되는 것도 아니며, 또 단일화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여전히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을 판정하기에는 전문지식이 없고 증거조사의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언론중재위 원래의 설립취지, 즉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라는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시정권고 기능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고, 시정권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후검열이 될 수 있다.

6.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언론중재제도는 일반국민들과 언론인들로부터 필요성과 중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5%를 넘게 나타났다. (언론중재위, 2004)

<표 1>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단위: %)

	신청인	피신청인
필요하다	95.4	97.8
필요없다	4.6	2.2
무응답	-	0
총계	100.0	100.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한국언론재단이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들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2004년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비율이 일반시민은 92%, 언론인은 97%에 달했다. (주동황외, 2004),

언론중재 이용자들은 중재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피신청인인 언론인들이 신청인보다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표 2>언론중재위원의 중재 중립성 (단위: %)

	신청인	피신청인
매우 편파적	7.8	6.7
편파적	14.4	13.3
보통	31.1	22.2
중립적	18.9	40.0
매우 중립적	27.8	17.8
무응답	-	-
종계	100.0	100.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중재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신청인보다 피신청인인 언론인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중재신청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모두 만족도가 높았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졌다.

<표 3> 중재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척도는 5점 만점)

	신청인	피신청인
합의	3.14	3.20
불성립	1.50	3.19
취하	2.81	3.80
기각	1.67	4.25
각하	2.67	4.4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일반인과 언론인들 간의 견해차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권중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높은 찬성비율을 보인 반면, 언론인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

<표5> 손해배상 청구권 중재권한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시민	언론인
바람직하다	56.5	17.7
시기상조다	23.0	19.7
불필요하다	12.0	44.9
비현실적 발상이다	8.5	17.7

출처: 주동황 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4년.

<표6> 직권중재제도의 효력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일반시민	언론인
현상태가 적당하다	47.5	76.5
직권중재권을 강화해야한다	52.5	23.0
기타	-	0.5

출처: 주동황 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4년.

한편 신청인들의 70% 이상이 향후 다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소송제기 외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중재제도는 국민들이 언론피해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언론피해에 대한 향후 대응 (단위: %)

대응방법	신청인
중재위에 반론보도청구	71.8
법원에 소송제기	14.5
해당매체에 적극항의	7.3
다른 상담기관 이용	1.8
대응하지 않겠다	1.8
기타	2.7
무응답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7. 마치며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과거 정간법과 방송법에 담겨있던 언론중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해 언론중재제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고, 혼란스러웠던 용어를 정비하고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손해배상을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중재제도의 중재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중재위의 기능에 새로이 포함되었거나 대폭 강화된 제도, 즉 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기능을 강화시키고, 조정이나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 소제기로 간주하는 제도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에게 언론중재제도를 보다 적극 홍보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언론계에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제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운 언론중재법 제정을 계기로, 언론계 스스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언론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개인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끝)

참고문헌

강경근, “언론관계법 개정의 방향: 언론발전론과 언론개혁론”, 한국언론법학회 제9회 세미나 발제문, 2004년 12월 9일

김종천, “언론피해구제법,” <언론개혁입법의 주요 쟁점>, 전국언론노동조합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년 12월 16일.

문재완,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언론개혁 입법의 주요 쟁점>, 한국헌법학회, 2004년 12월 15일

안상운, “언론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인권센터, 2003년 9월 4일

양경승,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 2004년 가을호, 5-19.

양삼승,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34-54.

양삼승,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27-42.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까지 연도별 중재신청 처리현황 및 시정권고 현황,” http://www.pac.or.kr/press/data/data_view.asp?seqid=65&num=6&page=1&cur_pack=0&s_field=&s_string=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중재>, 2004년 겨울호, 64-75.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2005년 2월.

유일상, “언론피해구제법안 왜 문제인가,” <언론피해구제법안 문제점과 과제>, 한국방송협회. 2004년 12월 10일

유지태,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과 발전 방향,” <언론중재>, 2004년 가을호, 20-34.

이강택.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에 대한 현업언론인들의 견해”, <언론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언론개혁국민행동, 2004년 08월 10일

이신,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문제점과 과제>, 한국방송협회. 2004년 12월 10일

이용성, “언론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모색: 언론중재위원회 강화론을 중심으로,”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인권센터, 2003년 9월 4일

이재진, 유재웅, “언론중재제도의 조정전치 기능에 대한 재고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효율성 관점에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004년 4월), 267-293.

조수정, “언론중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워크숍 발표논문, 2004년 12월 6일.

주동황 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2004년,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국민행동 외, “언론피해구제법(안) 제정 입법청원서,” 2004년 9월 21일.